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환사업 비용보전 등의 일몰기한 연장〉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07호)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56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96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30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95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37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7
1. 전환사업 비용 보전 등의 일몰기한 연장	7

I . 제안경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용갑의원안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6. 2. 20.
3. 회부연월일 : 2026. 2. 13.

2. 김선교의원안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5. 22.
3. 회부연월일 : 2026. 5. 26.

3. 어기구의원안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24.
3. 회부연월일 : 2026. 3. 25.

4. 문금주의원안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25.
3. 회부연월일 : 2026. 3. 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어기구의원안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23.
3. 회부연월일 : 2026. 3. 24.

2. 문금주의원안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25.
3. 회부연월일 : 2026. 3. 2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용갑의원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함.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축소 등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2. 김선교의원안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3. 어기구의원안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4. 문금주의원안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폐지가 우려되며, 축소·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어기구의원안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등).

2. 문금주의원안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폐지가 우려되며, 축소·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에 사용하도록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1. 전환사업 비용 보전 등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재원을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과 이에 따른 시·군·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보전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몰기한 종료일을 현행 2026년에서 2029년 또는 2030년 또는 2031년 또는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김선교의원안	박용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 제3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¹⁾ 은 이 법 시행일	제71조 제3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¹⁾ 은 이 법 시행일	제71조 제3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¹⁾ 은 이 법 시행일	제71조 제3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¹⁾ 은 이 법 시행일	제71조 제3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¹⁾ 은 이 법 시행일
부터 2026년 12월 31	029년 12월 31일	030년 12월 31일	031년 12월 31일	2032년 12월 31일

현 행	김선교의원안	박용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일까지 효 력을 가진 다.	-----.	-----.	-----.	----- -.
법률 제18544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544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544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544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544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 방 소 비세의 납 입에 관한 유 효 기 간)	제2조(지 방 소 비세의 납 입에 관한 유 효 기 간)	제2조(지 방 소 비세의 납 입에 관한 유 효 기 간)	제2조(지 방 소 비세의 납 입에 관한 유 효 기 간)	제2조(지 방 소 비세의 납 입에 관한 유 효 기 간)
제 71 조 제 3	-----	-----	-----	-----
항 제 4 호 가	-----	-----	-----	-----
목 및 나목	-----	-----	-----	-----
의 개정규	-----	-----	-----	-----
정 ²⁾ 은 이	-----	-----	-----	-----
법 시행일	-----	-----	-----	-----
부터 2026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년 12월 31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31일-
일까지 효	-----	-----	-----	-----
력을 가진	---.	---.	---.	-.
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어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법률 제16856호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법률 제16856호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법률 제16856호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71조(납입)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지방세법」

제71조(납입)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현 행	여기구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2조(적용기한) 제17조의2제1항제 7호 ³⁾ , 제18조제1항제5호 ⁴⁾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적용기한) ---- ----- ----- ----- -----2031년 1 2월 31일----- -----.	제2조(적용기한)----- ----- ----- ----- -----2032년 12 월 31일----- -----.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① -- ----- ----- -----2031 년 12월 31일----- -----.	제2조(유효기간) ① -- ----- ----- -----2032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제69조에서 지방소비세는 과세표준의 25.3%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이 중, 과세표준의 10% 부분과 4.3% 부분을 각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각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과 시·군·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교육감에게 안분하고 있음. 특히 전환사업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보전계정에 재원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동 제도는 한시적인 것으로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발전기금의 보전계정외의 계정(재정지원 계정, 용자관리계정)의 운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⁵⁾라는 점, 보전금의 80%가 道 지역에 보전⁶⁾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환비용 등 보전 종료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道지역 중심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사업 축소 또는 중단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비용 보전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또한, 병무청·복지부·농림부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⁷⁾과 일부 지방정부(전남·전북·경기·광주·나주 등)에서는 국민안전·사회복지 등 필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 칙 <법률 제9927호, 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342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보전금 배분 비중(5.8조) - 특·광역시 20%(1.1조), 道지역 80%(4.7조) 배분

7) (병무청·복지부)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사업, (농림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수사업의 안정성·연속성 확보를 위해 보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 보전계정의 다른 계정의 운용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용갑의원안(2030년 12월 31일)·어기구의원안(2031년 12월 31일)·문금주의원안(2032년 12월 31일)과 같이 비용 보전기간을 2029년 12월 31일 이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지방재정법」 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9)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0)

8)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 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부 칙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재정 특례)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6853호, 2019. 12. 31.>

제2조(적용시한)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부 칙 <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제2조(적용기한)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상의 전환사업 보전 관련 인용조문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